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444
----------	-------

발의연월일 : 2026. 4. 20.

발 의 자 : 김상훈 · 김선교 · 이현승
고동진 · 유용원 · 박충권
윤한홍 · 이달희 · 안철수
박상웅 · 이만희 · 박대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보증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과 관련된 채무를 보증하는 유동화회사보증 제도를 두고 있으나, 기술보증기금이 직접 기초자산을 인수하여 신탁계정을 활용한 방식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런데 현행 방식은 유동화증권의 발행주체가 유동화전문회사라는 이유로 발행구조가 제한되고, 이에 따라 조달비용이 높아질 수 있으며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활용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술보증기금이 회사채등을 취득 또는 인수하여 이를 기초로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한 후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제도를 신설하며,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 신설)

등).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유동화회사보증”을 “유동화보증”으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가 부담하는”을 “회사채등 유동화와 관련하여 유동화회사 및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의 수탁자(이하 “유동화회사등”이라 한다)가 부담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회사채등”이란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말한다.

9의3. “회사채등 유동화”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가 자산보유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양수한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나. 기금이 기업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인수한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한 후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이하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이라 한다)

9의4. “유동화증권”이란 유동화회사가 제9호의3가목의 회사채등 유동화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이하 “유동화사채”라 한다)와 기금이 제9호의3나목의 회사채등 유동화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이하 “유동화수익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률 제21540호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28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3호 및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3호(중전의 제10호) 중 “제9호까지의”를 “제12호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동화회사보증업무”를 “유동화보증업무”로 한다.

10. 제28조의3제4항에 따라 양수한 자산에 대한 권리의 행사

11. 유동화보증

12.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제28조의3의 제목 “(유동화회사보증)”을 “(유동화보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동화회사가 신기술사업자의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을 “유동화회사등이 회사채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동화회사보증”을 “유동화보증”으로, “자산보유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가”를 “자산보유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동화회사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로부터”를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금은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할 수 있다.

제2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5(회사채등 유동화신탁) ① 기금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회사채등을 기업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인수하여 이를 기초로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고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신탁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탁설정은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기금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할 수 있다.

③ 기금이 제1항에 따른 회사채등의 취득·보유·신탁 및 유동화수익증권의 발행을 하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40조, 제61조, 제63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임직원에 한정한다), 제103조제3항, 제108조제6호, 제114조, 제415조부터 제418조까지, 제420조 및 제4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기금이 대출채권을 기초로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을 하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기금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여신금융기관으로 본다.

⑤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1조 및 「신탁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회사채등 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유동화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⑥ 기금이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신탁의 종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유동화수익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탁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자산인 회사채등을 매입할 수 있다.

⑦ 기금은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신탁이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의 계산을 하고 그 계산서를 공시하여야 하며, 최종 계산서 공시와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신탁법」 제10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와 귀속

관리자가 계산서 공시 후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는 최종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동화회사보증에”를 “유동화보증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신탁 대상 회사채등의 종류
- 나. 회사채등의 취득 또는 양수 등의 방법
- 다. 가목 및 나목의 자산 관리·운용 방안
- 라. 유동화수익증권의 수익 분배방법
- 마.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을 위한 자금차입

제33조제1항 전단 중 “기업”을 “기업(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33조의2 중 “제28조제1항제4호·제4호의2·제5호·제6호·제9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제28조제1항제4호·제4호의2·제5호·제6호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로 한다.

제35조제1항 단서 중 “유동화회사가”를 “유동화회사등이”로 한다.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상채권”을 “구상채권(제28조의3제4항에 따라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 양수한 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을 “제5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제28조의3제4항에 따른 업

무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행사를”을 “행사 또는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양수한 자산에 대한 권리의 행사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8. (생략)</p> <p>9. “<u>유동화회사보증</u>”이란 기술보증기금이 「<u>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u>」에 따라 설립된 <u>유동화전문회사</u>(이하 “<u>유동화회사</u>”라 한다)가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p> <p><신설></p> <p><신설></p>	<p>제2조(정의)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유동화보증</u>----- -----<u>회사채등</u> <u>유동화</u>와 <u>관련하여 유동화회사 및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의 수탁자</u>(이하 “<u>유동화회사등</u>”이라 한다)가 부담하는----- -----.</p> <p>9의2. “<u>회사채등</u>”이란 기업이 발행한 <u>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u>을 말한다.</p> <p>9의3. “<u>회사채등 유동화</u>”란 「<u>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u>」에 따른 <u>자산유동화</u>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u>자산유동화에 관한 법</u></p>

를」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가 자산보유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양수한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나. 기금이 기업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인수한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한 후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신 설>

10. · 11. (생략)

법률 제21540호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28조(기금의 업무)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9.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10.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
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4
호의3 및 제5호부터 제9호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이하 “회사채등 유동
화신탁”이라 한다)

9의4. “유동화증권”이란 유동화
회사가 제9호의3가목의 회사
채등 유동화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이하 “유동화사채”라 한
다)와 기금이 제9호의3나목의
회사채등 유동화에 따라 발행
하는 수익증권(이하 “유동화
수익증권”이라 한다)을 말한
다.

10. · 11. (현행과 같음)

법률 제21540호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28조(기금의 업무) ① -----
-----.

1. ~ 9. (현행과 같음)

10. 제28조의3제4항에 따라 양
수한 자산에 대한 권리의 행
사

11. 유동화보증

12.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13. -----

-----제12호까

③ 기금은 유동화회사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로부터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 또는 그 밖의 업무를 수탁(受託)하여 수행할 수 있다.

<신 설>

④ (생략)

<신 설>

③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

-----.

④ 기금은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할 수 있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8조의5(회사채등 유동화신탁)

① 기금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회사채등을 기업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인수하여 이를 기초로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고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신탁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탁설정은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기금은 신탁을 해

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할 수 있다.

③ 기금이 제1항에 따른 회사채등의 취득·보유·신탁 및 유동화수익증권의 발행을 하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40조, 제61조, 제63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임직원에 한정한다), 제103조제3항, 제108조제6호, 제114조, 제415조부터 제418조까지, 제420조 및 제4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기금이 대출채권을 기초로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을 하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기금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여신금융기관으

로 본다.

⑤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1조 및 「신탁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회사채등 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유동화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⑥ 기금이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신탁의 종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유동화수익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탁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자산인 회사채등을 매입할 수 있다.

⑦ 기금은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신탁이 종료한 경우 지체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의 계산을 하고 그 계산서를 공시하여야 하며, 최종 계산서 공시와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신탁법」 제10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계산서 공시 후 1개월

제29조(업무방법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2. (생략)

3. 유동화회사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 라. (생략)

3의2. (생략)

<신설>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는 최종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업무방법서) -----

-----.

1. 2. (현행과 같음)

3. 유동화보증에-----

가. ~ 라. (현행과 같음)

3의2. (현행과 같음)

3의3.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신탁 대상 회사채등의 종류

나. 회사채등의 취득 또는 양수 등의 방법

다. 가목 및 나목의 자산 관리·운용 방안

라. 유동화수익증권의 수익분배방법

마.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을 위한 자금차입

4. ~ 8. (생략)

제33조(보증료 등) ① 기금은 보증
증을 받은 기업으로부터 보증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료를 받는다. 이
경우 기술보증을 받은 신기술
사업자의 해당 사업이 현저한
경영성과를 얻은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사업자로부터 별도의 약
정에 따른 성과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33조의2(수수료) 기금은 제28조
제1항제4호 · 제4호의2 · 제5호
· 제6호 · 제9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35조(보증관계의 성립) ① 기금
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을 하기
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그 기업과 그 기업의 채권자가

4. ~ 8. (현행과 같음)

제33조(보증료 등) ① -----
-----기업(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수수료) -----제28조
제1항제4호 · 제4호의2 · 제5호
· 제6호 및 제9호부터 제13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제35조(보증관계의 성립) ① -----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유동화회사가 제2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유동화증권을 발행함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증권 인수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 ③ (생략)

제37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기금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회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5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

-----유동화회사등-----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

-----구상채권(제28조의3제4항에

따라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 양

수한 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

-----.

1. ~ 3. (현행과 같음)

제5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
